

#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1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1년 1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1. 1. 17)  
상정 및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도로과장 오응완)

### □ 제안이유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386호, 2010. 9.17. 공포, 2010. 9. 23.시행)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조정하고자 함.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주유소, 주차장, 터미널, 휴게소 등의 진입로·출입로의 점용료 산정요율을 토지가격의 0.025에서 토지가격의 0.02로 변경함.  
(안 별표 1).
- 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제5호).

###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 도로점용료를 완화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점용 허가시 점용료 산정요율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임.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업무국장”을 “교통도로업무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점용료”를 “영 제42조에 따른 점용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개년도”를 “2개 연도”로 하고, “연간점용료가”를 “연간점용료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이 같은 법 제20조의 공동시설로 비 가리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당해연도 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년도개시 후 3월 이내에”을 “해당 연도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

계 별지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등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88조”를 “법 제89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미터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미터 초과 0.2미터이하			400	
		지름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850	
		지름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1,250	
		지름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1,650	
		지름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2,050	
		지름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3,100	
		지름 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			5,200	
		지름 3.0미터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미터 이하	길이 1미터
	지름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600			
	지름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1,250			
	지름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1,850			
	지름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2,500			
	지름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3,100			
	지름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4,600			
	지름 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		7,750			
	지름 3.0미터 초과		10,850			
	3.광고탑, 광고관,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관,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기 타		표시면적 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제곱미터	1년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제곱미터	1일	50	

		기타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제공미터	1년	41,400
		기 타			20,700
4.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제공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 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 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 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5.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제공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 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제공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 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 를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 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 지 가 격 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7.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제공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 를 곱한 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8.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제공미터	1일	150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9.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제공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제공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 를 곱한 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25 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